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17 선고 2019가단5019644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기풍
담당변호사 송명근

피 고 1. 주식회사 B
2. C
3. D
4. E
5. F

피고 4, 5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형구
변론 종결 2019. 10. 11.(피고 1, 2, 3에 대하여) 2019. 11. 8.(피고 4, 5에 대하여)
판결 선고 2020. 1. 17.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B, C,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1. 12.부터 2019. 2. 1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2019. 5. 10.까지는 연 9%의,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 C, D에 대한 나머지 청구, 피고 E, F에 대한 청구를 모두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C,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원고와 피고 E, F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피고 주식회사 B, C,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2.부터 2019. 2. 1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소장부분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D과 피고 E, F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8. 4. 17. 체결된 매매계약을 132,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 E, F는 원고에게 1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피고 주식회사 B, C, D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피고 회사, C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다. 자백간주 판결(피고 D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라.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2019. 6.

1.부터는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적용하게 되어,이를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함.

2. 피고 E, F에 대한 청구

가. 쌍방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한편 그 이후 기존 근저당권등기가 말소되었으니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 사건 구상금채권액의 범위 내인 이 사건 부동산 가액에서 기존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 상당의 가액배상을 청구한다.

(2) 피고 E, F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 발생하지 않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하여 피고 E, F는 선의의 수익자이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1. 17. 피고 C, D의 연대보증하에 피고 회사와 피고 회사가 소외 회사로부터 열을 공급받고 부담하게 될 채무에 대하여 보험계약자 피고 회사, 피보험자 소외 회사, 보험가입금액 200,000,000원, 보험기간 2018. 1. 18. ~ 2020. 1. 17.로 정하여 이행(지급)보증보험약정을 하고, 2018. 1. 18. 소외 회사에 대하여 보험계약자 피고 회사, 피보험자 소외 회사, 보험가입금액 200,000,000원, 보험기간 2018. 1.18. ~ 2020. 1. 17.로 하는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하였다.

(나) 피고 회사의 2018. 7.경 열사용료 미지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는데 2019. 1. 11. 기준 소외 회사에 대하여 열사용료채무 200,000,000원을 연체하여, 같은 날 원고가 소외 회사에 위 돈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D에 대하여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2.부터 2019. 2. 1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2019. 5. 10.까지는 연 9%의,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채권(이하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다.

(라) 피고 D은 2018. 4. 17. 피고 E, F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18. 5. 21. 피고 E, F 앞으로 소유권이 전등기(각 1/2지분)를 마쳐주었다.

(마)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 D은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G기관장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대한 회신결과,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2) 판단(가) 사해행위 여부가 사건 매매계약 체결 약 3개월 전에 원고의 이 사건 구상금채권의 성립의 기초가 되는 이행(지급)보증보험약정이 체결되어 있었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 약 3개월이 지난 2018. 7.경 피고 회사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2019. 1. 11. 보험금을 지급하였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구상금채권의 성립이 가까운 장래에 현실화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채무초과 상태인 피고 D이 피고 E, F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가 된다. (나) 피고 E, F의 선의 여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다3633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매매계약이 정상적인 거래로서 피고 E, F가 선의의 수익자인지에 관하여 본다. 을라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E, F는 부부로 피고 D과는 아무런 인적관계가 없고 H공인중개사사무소 공인중개사 I의 중개로 비로소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게 된 점, ② 피고 E, F가 매수한 금액은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세와 비슷한 점, ③ 피고 E, F가 피고 D에게 자신들의 자금으로 이 사건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 E, F가 정당한 대가를 지급한 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하므로, 결국 피고 E, F의 악의 추정은 반복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결론

원고의 피고 회사, C, D에 대한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피고 E, F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김병룡

별지

1동의건물의표시

경기도 의정부시 아파트 동[도로명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전유부분의건물의표시

건물의번호 :

구 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면 적 : 제19층 호 84.9904㎡

대지권의표시

토지의표시 : 1. 경기도 의정부시

대 25634.1㎡

대지권의종류 : 1 소유권

대지권의비율 : 25634.1분의 36.9116

청 구 원 인

1. 이행(지급)보증보험

원고는 2018. 1. 17.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함)의 부탁으로, 피고 C, D의 연대보증하에, 피고 회사와의 사이에 피고 회사가 소외 주식회사 J(이하 '소외 회사'라 함)로부터 열을 공급받고 부담하게 될 채무에 대하여 보험계약자 피고 회사, 피보험자 소외 회사, 보험가입금액 200,000,000원, 보험기간 2018. 1. 18. ~ 2020. 1. 17.로 정하여 이행(지급)보증보험약정을 하고, 2018. 1. 18. 소외 회사에 대하여 보험계약자 피고 회사, 피보험자 소외 회사, 보험가입금액 200,000,000원, 보험기간 2018. 1. 18. ~ 2020. 1. 17.로 하는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하였다.

2. 주채무내용

위 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소외 회사는 피고 회사와의 사이에 체결된 열 공급 계약에 따라 열을 공급하였다.

3. 구상채권의 발생 및 범위

가. 보험금

피고 회사의 2018. 7.경 열사용료 미지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으로 말미암아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는바,

피고 회사는 2019. 1. 11. 기준 소외 회사에 대하여 열사용료 채무 200,000,000 원을 연체하여 같은 날 원고가 소외 회사에 위 돈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나. 지연손해금

위 이행(지급)보증보험약정 당시 구상채무자들은 위 약정 제3조 제2, 3항 소정의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소외 회사에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원고가 정한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변상하기로 약정하였는 바, 원고가 정한 이율은 그 보험금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30일째까지는 연 6%, 그 이후부터는 연 9%이다.